

가정상담기

2016

통권 399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56 ~ 20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1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

한국처방제연구원

법률상담소

경로
합의
합의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창립 60주년 기념식
- 19 • 창립 60주년 기념식 화보
- 23 • 특집 I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⑤
- 28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32 • 결혼과 인생(165) 만화일기
10월의 마지막 밤 _ 장차현실
- 33 • 인터넷 상담
- 34 • 상담소 소식
- 36 • 지부소식
- 37 • 상담통계
- 38 • 새로 들어온 책

이 달의 메시지



법률복지의 새 길을 열어온 상담소가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바라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10월 12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상담소 강당에는 상담소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이 마련되었습니다. 1956년 창립 기념식 사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담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앞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 특히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은 1978년에 시작한 상담소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머니 학교'의 졸업생들이나 젊은 시절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 해 주셨던 회원들이 창립 6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가 자신들의 젊었던 시절을 사진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담소의 역사입니다. 상담소를 찾았던 무수히 많은 내담자들 그리고 상담소를 통해 사회의식을 갖게 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을 돕는 기쁨과 그를 통해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회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온 것이 바로 상담소인 것입니다.

상담소가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저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어 처음 상담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큰 뜻을 품었지만 보기에는 아주 작은 씨앗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태영 선생님은 가셨지만 선생님께서 처음 뜻을 세워 심은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 우

리 사회의 소외계층, 빈민하는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을 찾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지난 3월부터 ‘백인변호사단 모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등의 심포지엄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10월 12일 상담소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이 뜻깊은 해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상담소는 법률상담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대에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의 제정과 개정운동, 의식화 교육,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연구와 출판, 홍보로 이어지는 폭 넓은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했고 뿌리내려 왔습니다. 상담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법률구조 사업은 6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법률복지의 틀을 세웠으며 마침내는 법률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소가 지난 2011년 제21회 호암상 사회복지사상 부문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며,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법입니다. 상담소에서는 지난 60년 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부부평등, 양성평등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복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상담을 기초로 법률구조 사업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저 시간이 흘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담소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부터 현재 상담소의 가장 젊은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담소의 전 현직 이사님들은 물론 백인변호사단의 변호사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펼친 모든 사업 그리고 기념식은 이러한 상담소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우리 사회 모든 빈민하는 이웃, 소외계층의 버팀목이며 법률구조 사업의 선구자로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감사의 자리에 바쁘신 시간 중에도 함께 해 주신 각계각층의 여러분과 선배, 후배, 동료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김현웅 법무부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모든 업무를 하면서도 상담소 역사의 한 장을 새로이 더할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상담소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사와 함께 더 성장해갈 상담소의 앞날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기념 사진전

지난 10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날 기념식은 내외귀빈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를 소개하는 영화가 식전행사로 상영되었고 개회, 국민의례, 본소 광배희 소장의 기념사, 본소 임재연 이사의 상담소 연혁 소개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축하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상담소 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로패, 감사패 수여 및 근속표창이 있었으며 상담소의 60년 역사를 보여준 박진아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김소현' 뮤지컬 배우와 '자전저 탄 풍경'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가 진행된 본소 강당에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60주년 기념 전시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가 열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상담소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공로패, 감사패 및 근속표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로패 김상용

• 감사패 한수자 김정혜 김인숙 박선화 심무순 강경숙
유문숙 한정희 홍진범 문은전 천정환 강종협
심미숙 이수연 정상수 전성배 이진철
데이비드 워터스 조영삼 양임석 장진호(진주지부)
유경재 황동규 장진호(제천지부) 강호정 최강호
김흥면 우관수 권오용 정영근 강재현 김병철
김 영 김재성 강길복 배용재 문대근 이창림
신현일 신성욱 우애령 이서원

• 직원근속표창

이혜숙 전성배 김현옥 조경애 박소현 이숙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차연실 최수진 박상진



축 · 하 · 말 · 씬

정세균 국회의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명희 이사장님을 비롯해 오늘이 있기까지 상담소를 함께 키워 오신 이사님, 감사님들과 100인 변호사단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故 이태영 선생님과 김홍한 소장님에 이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3대 소장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곽배희 소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60년 세월동안 오로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를 위해 활동해 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956년, 단칸방에서 순수민간단체로 첫 발을 내딛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60살이 된 지금 명실상부한 민간법률구조기관으로서 가정문제 해결 전문기관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창설자이신 故 이태영 선생님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0년을 맞이하던 해에, “30년은 어둠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세월이었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는 세월이었으며 무형에서 유형의 역사를 창조해 내는 각고의 세월”이라고 회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 60년은 차별과 불합리한 관습의 높은 벽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며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활동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가족법개정운동, 사회교육사업 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가정의 민주화, 평등한 가족관계, 여성의 권익신장 등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사회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의 근간인 ‘가정’도 그 변화를 비켜 설 순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개념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실의 변화를 읽고, 선도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대 국회 역시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이자 인류의 평화라는 믿음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가정,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60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 하 · 말 · 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광배희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6년 첫 여성 변호사였던 고 이태영 박사께서 ‘여성법률상담소’의 문을 연 이래, 상담소는 가부장제 폐습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구제하고 가족의 행복을 일구는 데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상담소는 60년 동안 한결같이 양성의 평등과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하소연할 곳 없고 힘 없는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상담소는 여성 권익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양성의 평등을 이루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가족법의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담소가 이끈 선구적 교육과 활동이 있었기에, 성별에 따른 역할과 지위가 나뉘어 있다는 과거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인습과 관념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국가정책과 법의 규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도 눈부시게 확대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험한 길을 헤치고 성장해온 상담소의 60년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 여성운동과 여성권의 보장 및 양성평등 심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혈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담소의 기여와 성취에 가장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1997년 동성동본 금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롯하여, 호주제와 부성(父姓)주의, 국적법 부계혈통주의 헌법불합치 결정, 제대군인가산점 위헌 결정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도록 초청받은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공을 인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상담소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식정보사회, 국제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도력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의식과 사회구조가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앞으로도 항상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가족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는 길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축 · 하 · 말 · 씬

김현웅 법무부장관

존경하는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0년이면 ‘회갑’을 맞이한 것인데, 회갑은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동안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평생을 헌신하신 광배희 소장님의 고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故) 이태영 박사님께서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이념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계승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이들의 편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 폐지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사의 전환’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350만여 건의 무료 법률상담과 1만여 건의 소송구조를 통해,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행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또한, ‘법률계몽교육’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그 가정의 행복찾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고(故) 이태영 박사님, 그리고 광배희 소장님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실현을 위해, 여성 권

익 회복과 가정문화 발전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면도 있고, 보완·개선해야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함은 물론,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이 열정과 경륜을 가진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예산과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출발했던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신념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혁



이 땅에 최초로 탄생된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박사에 의해
 여성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1956년 창설되었다

1956년 8월 제 1대 황신덕 이사장, 이태영 소장 취임



1963년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가사심판법 제정 입법 초안에 참여



1960년 4월 가정법률 전문상담을 특화, 가족법개정운동 주도



1964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법률임상 교육 시작



1966년 8월 가정법률상담소 이름을 바꾸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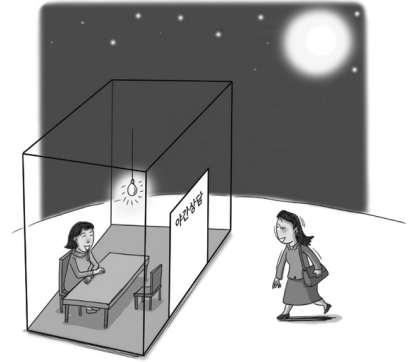
1970년 8월 국제법률부조협회 회원으로 가입, 이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발전의 길을 열었음



1971년 이태영 소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수상 <가정상담> 창간호 발행



1972년 11월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개설



1975년 이태영 소장, '라몬 막사이사이 상' 사회지도부문 수상

1976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름을 바꾸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법인이 됨
12월 여성백인회관 준공



1977년 6월 '동성동본혼인문제신고센터' 설치 '목요법률강좌' 신설



10월 무료결혼식 시작



12월 이동 순회상담 시작

1978년 3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어머니 학교' 개설

4월 지속적인 출판, 홍보, 조사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 등록



1979년 5월 백인변호사단 결성



1982년 4월 법의 생활화운동으로 대통령표창

1983년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지부 설치 사업에 역점



1984년 9월 교육원 개원

1985년 5월 상담소의 노래 (고은 작사, 김순애 작곡) 제정

1986년 2월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가정상담>을 월간으로 발행

4월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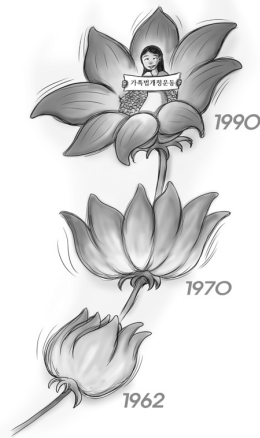
10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가정현장' 선포



1987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 발간
 7월 법률구조법 제정을 이끌어 냄
 1988년 7월 법률구조법에 의거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 등록



1962, 77, 90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그 결실을 맺음



1990년 1월 '동성동분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2월 서울시청 내에 임대차분쟁조정상담 시작



1992년 1월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발간
 1995년 2월 28일 제 2대 김흥한 소장 취임
 1996년 10월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1997년 7월 동성동분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끌어 냄



1998년 8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



12월 17일 상담소 창설자인 이태영 전 소장 영면



1999년 5월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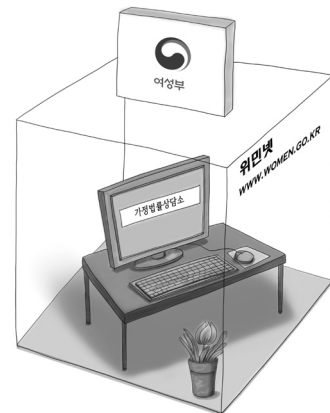
2000년 2월 29일 제 3대 박배희 소장 취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 폐지 입법 청원



11월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2001년 10월 창립 45주년 기념 리셉션 및
KBS 열린 음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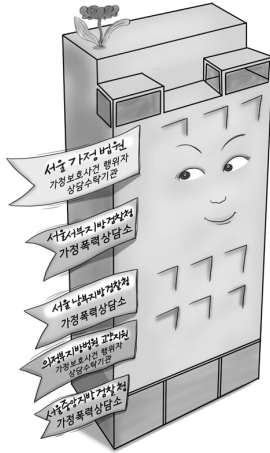
11월 제1회 '비추미 여성 대상' 특별상 수상
2002년 5월 여성부 위민넷 가정법률상담 시작



2차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2003년 2월 제 4대 윤후정 이사장 선임
2004년 1월 이혼전 상담교육 신설 운영



2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 위촉



6월 부부재산제 개정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 제정 추진 본격화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 위촉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법률상담소' 업무표장 등록



12월 제 5대 차명희 이사장 선임



2005년 1월 여성백인회관 재건축으로 세실 II 빌딩 (여의도동 13-17)으로 임시 이전

2월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주도

3월 주도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6월 서울시 지원 '위기가정SOS' 사업 실시

2006년 1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사업 실시



6월 제2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1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정보호사건 행위자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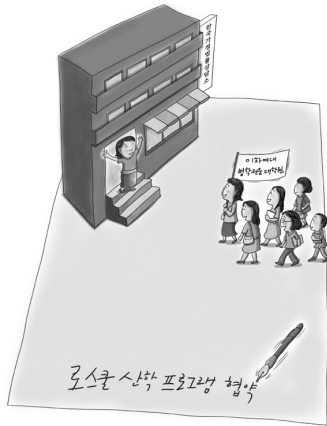


2007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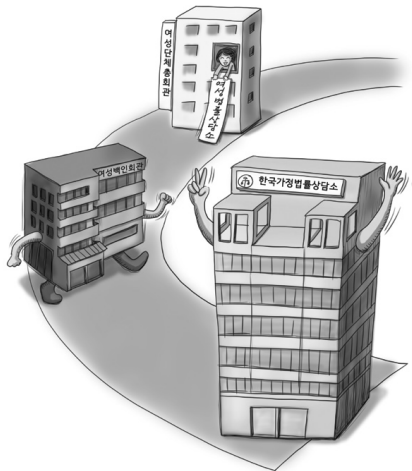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지원 가정폭력피해여성 /
한부모가정 양육비 법률구조사업 시작



10월 이화여대와 로스쿨 산학 프로그램 운영 협약
(현재 5곳)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1월

법원행정처 지원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사업 시작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법원장 표창
받음



10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본격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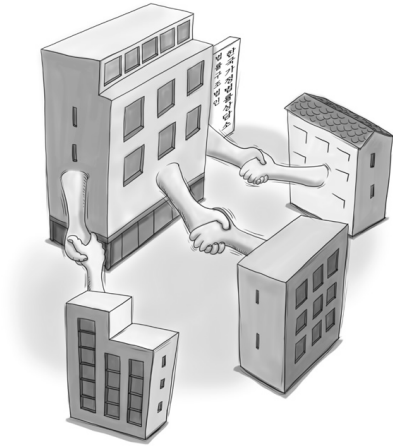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뉴스 발송 시작



12월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지정
외부 기관과의 법률구조 협약 체결 시작



8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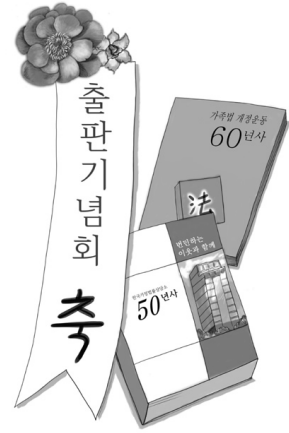


법제처로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협력기관으로 지정



10월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발간 및 출판기념회



12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2010년 3월

포털사이트 다음 미즈넷 가정법률상담 시작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출장상담 시작



5월 창립 55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6월 제 21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영등포구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월 창립 55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
기념심포지엄 개최,
회관 머릿돌 단기



2012년 3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우수 단체 표창

6월 법무부 법률사무증서기관 지정

2013년 2월 로스쿨 실무수습기관 지정



2014년 6월 고 이태영 명예이사장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식 및 추모문집 발간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 법률구조업무협약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2016년 7월 LN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10월 창립6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식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관련 서울 인권표지석 설치

- 그림 장차현실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5)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조영훈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고는 한국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현대가족의 특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가족다양성’을 면밀히 논

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다양성 증가와 관련된 변화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동이 갖는 가족 삶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생활을 관통하는 계층적 효과를 통해 현재의 가족변화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가족내파(內波)의 부수적 산물에 다름 아님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머리말 : 왜 캐나다인가?

캐나다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상과 같은 매우 선진적인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복지지출수준이 선진산업국가들 가운데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의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선진산업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이다. 캐나다와 한국은 적게 걸어서 적게 쓰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 인 것이다.

복지국가발전의 측면에서 보이는 캐나다와 한국의 또 다른 유사성은 두 국가 모두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사적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공적지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출 대비 사적지출의 비중은 26.4%이고, 한국은 30.0%이다. 이 비율은 미국 등 2-3개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치로서 두 국가는 복지선진국들에 비해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도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유사성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두 국가 모두 시장자유주의/보수주의 정치세력과 개혁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정치적 구도를 보이고 있다. 단, 캐나다는 개혁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당이 보수당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한국에 비해 좌파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 두 국가 모두 노동조합의 파워가 매우 약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에 의해 지배된다.

셋째, 두 국가의 고령화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2014년 현재 캐나다는 15.7%로서 한국의 12.7%에 비해 3% 포인트 높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그 차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질 것이다.¹⁾

2. 연금제도

캐나다의 연금은 이른바 3층 구조(three tiers) 연금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보편연금과 공공부조연금이 일층, 가입자의 기여금에 기초한 소득비례적인 사회보험연금이 이층, 그리고 기업연금 등의 민영연금이 삼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 보편연금과 공공부조연금

캐나다의 공적연금은 1927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노령연금법안(Old Age Pensions Act)에서 시작하며 1951년에는 자유당 연방정부 하에서 Old Age Security Act가 통과되어 기존의 노령연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는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70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연금으로서 연방정부가 관리운영을 담당하였다.

1967년에는 OAS 수급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도입되었다. 1989년에는 보수당이 통치하는 연방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일정소득 이상의 노인들에게 OAS의 급여를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AS의 보편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약화되었다.²⁾

2016년 현재 OAS는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지니며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65세의 캐나다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캐나다시민은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때에만 OAS의 수급자격을 가진다. OAS는 캐나다에 40년 이상 거주했을 때 완전연금을 지급하며, 40년에서 모자라는 햇수만큼 연금급여액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서, 18세 이후에 30년을 캐나다에 거주하였을 경우 OAS의 연금급여액은 완전연금의 75%가 되는 것이다.

OAS의 수급자 가운데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심사를 거쳐 GIS가 주어진다. GIS의 수급자격은 OAS의 수급자이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이다. 급여액은 결혼여부와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해 연

1) 2000년에 캐나다의 고령화율은 12.5%이고 한국은 7.2%였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0년 15.7%, 2030년에는 24.3%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2014년 현재 각국의 고령화율은 독일 20.8%, 프랑스 18.2%, 스웨덴 19.4%, 일본 26.0%, OECD 평균 15.9%였다.

2) 이 시기에는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개인순소득 부분에 대해 15%의 비율로 OAS 급여가 환수되었다. 급여환수 조치에 대해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보수당 정부는 재정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다만, 연금수급자는 연소득이 작기 때문에 OAS의 급여환수 조치로 인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방정부가 제공하는 GIS는 주정부가 저소득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부조급여들(소득지원금, 난방보조금, 처방약지원금, 재택간병지원프로그램 등)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기도 한다.

OAS와 공공부조연금들은 1월부터 매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OAS는 과세대상인 반면에 GIS는 비과세소득이다. 2016년 5월 현재의 수급자 수는 OAS 565만 명, GIS 183만 명이다.

2) 사회보험연금

캐나다의 사회보험연금은 CPP(Canada Pension Plan)로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1966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18세 이상의 모든 캐나다 시민들에게 강제 적용된다. OAS가 보편급여로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반면에, CPP는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비례연금이다. CPP의 재정은 순수하게 가입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만 충당된다.

CPP는 소득비례연금이라는 하지만 기여금 대상소득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 즉, 연소득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CPP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고, 최고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급여는 65세부터 제공된다. 그렇지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급여를 최대 5년까지 일찍 혹은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조기퇴직연금을 받으려면 60세 이상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거나 일정 이하의 소득만이 있어야 한다.

3) 비교와 평가

(1) 기초연금과 사회보험연금의 비교

캐나다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OAS+GIS)과 사회보험연금(CPP+QPP)로 구성되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기

초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들에서는 소득비례적인 사회보험연금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캐나다의 공적연금 구성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2) 연금소득과 노인빈곤

캐나다는 사회보장지출수준이 매우 낮고,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역시 매우 낮다. 캐나다의 공적연금지출은 GDP 대비 4.3%로서 OECD 평균치의 54%에 불과하고, 미국에 비해서도 2.4% 포인트나 낮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이 적기 때문에 캐나다 노인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율은 38.5%로서 OECD의 평균치보다 20.1% 포인트 낮고 독일이나 프랑스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노인빈곤율은 6.7%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도 그렇지만, 독일이나 일본 등 공적연금체계가 소득비례적인 사회보험연금 중심으로 짜여 있는 국가들에서는 연금급여수준이 높은 노인들도 많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이 국가들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노인들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서, 캐나다는 사회보험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연금대상소득의 25%에 불과하지만, 보편연금의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보험연금 중심의 국가들에 비해 캐나다는 공적연금지출수준이 낮은 대신에 노후소득이 다소 균등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연금의 급여수준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면, 사회보험연금이나 기업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더라도, 그리고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다수의 노인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3. 육아 및 아동급여

1) 출산과 육아³⁾

캐나다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주로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모성급여(maternity benefit)가 제공되고, 육아를 위해서는 부모급여(parent benefit)가 주어지며, 아동의 간병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간병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세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양육, 혹은 간병으로 인해서 주당 소득이 40% 이상 감소하고 수급자격 기간 동안 최소한 600시간 근무했을 때 주어진다. 이 세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마찬가지로 근로기간 평균소득의 55%이다.

우선, 모성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최대 15주까지 지급되며, 출산 전 8주부터 출산 후 17주 사이에 수급할 수 있다. 모성급여의 소득대체율은 55%이지만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부모급여는 출산(혹은 입양)아동의 양육을 위해 출산(입양) 후 52주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35주 지급되며,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양자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다. 금액은 모성급여와 똑같다. 부모급여의 수급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주당 50달러 혹은 주급의 25% 이상의 금액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간병급여는 아프거나 쇠약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주간 지급된다.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은 모성급여와 동일하며, 동일 인물에 대해 모든 가족들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간병급여가 제공되는 가족의 범주에는 부모, 자식, 형제(배우자 및 사실혼 동거인 포함), 조부모, 조손 및 그 배우자, 삼촌 및 조카(배우자 및 사실혼 동거인 포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 과거 및 현재의 후견인 등이

포함된다.

2) 아동급여

캐나다에서 아동부양을 위한 세금공제가 실시된 것은 1919년이었고, 1945년에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가족수당이 도입되어 모든 아동부양 가족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재정압박을 이유로 보수당 연방정부는 1989년, 1993년 개정을 추진하여 캐나다 최초의 보편주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자유당 연방정부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중산층 이하의 가족에 대해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주정부는 보충급여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6년 7월에는 보수당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아동급여를 도입하여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3) CCB(Canada Child Benefit)

2015년 10월의 캐나다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유당은 소득세와 아동급여의 개편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2016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소득세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45,282달러에서 90,563달러 사이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2.0%에서 20.5%로 1.5%포인트 인하한다. 둘째, 연간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기존의 29%에서 33%로 높인다.

이와 함께 자유당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아동급여체계를 CCB(Canada Child Benefit)로 일원화하여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CCB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존의 아동급여에 포함된 보편주의의 요소와 세금감면조치를 폐지 내지는 약화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아동급여액을 늘리는 데 있다.

이전의 아동급여제도와 비교할 때 CCB는 저소득층뿐 아

3) 이 부분은 (Government of Canada, 2016a)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나라 중산층에게도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 캐나다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전체 아동부양 가구의 90%가 이전 제도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며, 평균적으로 연 2,300달러를 더 받는다고 한다. 소득최상위층으로부터 최하위층 가정에게로 혜택을 이동시킴으로써 아동빈곤율을 1/3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한다(Rabson, 2016).

중위소득 50%선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캐나다의 아동빈곤율은 13.1%로서 일본(14.9%)이나 미국(23.1%)에 비해서는 낮지만, 스웨덴(7.3%), 독일(8.5%), 프랑스(8.8%) 등의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높다(UNICEF, 2012: 3). CCB 도입으로 인해 캐나다의 아동빈곤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맺음말

전반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가족복지정책은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통해 노인과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캐나다의 노인들에게는 사회보험연금인 CPP, 보편연금의 성격을 지니는 OAS, 공공부조연금인 GIS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연금이 제공된다. 특히 OAS의 급여수준이 CPP에 비견될 정도로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올해 7월부터 CCB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아동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대급여액을 초과세로 지급함으로써 캐나다 아동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AS와 CCB는 빈곤을 감소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증진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OAS는 상위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액되어 지급되고 최상위소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대신

에,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저소득층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다수의 노인들 간의 사회연대성 형성에 기여한다. CBB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삭감되기는 하지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 일정 정도의 양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하나의 제도에 포함시키고 중산층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전형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달리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성격의 연금과 아동급여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조세저항이 강력한 사회여건상 캐나다에서 유럽식의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복지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보험연금 등 중산층 시민들에게 유리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캐나다는 노인과 아동이라는 취약계층의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른 한편, 이상과 같은 현금지급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캐나다에는 북구에서와 같이 사회서비스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OAS나 CCB는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수급자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공적 케어서비스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의 노인들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OAS 등의 연금지급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이용자들은 CCB 급여액을 보육서비스의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작은 정부'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⁴⁾

4) 참고로 퀘벡주에서는 하루 7달러 이상의 보육료에 대해서 주정부가 지원한다. 2015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보육비용 지원책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정당은 NDP가 유일하다. NDP는 하루 15달러 이상의 보육료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재정은 연방정부 60%, 주정부 40%로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자유당은 적절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Hyslop, 2015; Phillips, 2015).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이혼 후 10여년 동안 단 한번만 양육비를 지급한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5-472

담당 : 윤재경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6세)과 상대방(남, 48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으나, 2005년 1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차례 준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우울증 및 무릎통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학원비만 한 달에 35만원, 보험료와 도서비용까지 합치면 월 70만원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며, 더 이상 청구인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기가 어려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춘천지방법원 2016. 7. 20)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7.10.30. 400만원, 2018.10.30. 400만원, 2019. 10. 30. 4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을 지체하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금액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17.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은 수입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고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합계금이 120만원이 되도록 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농한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4:00부터 18: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0여년간 외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결정

법률구조 2015-511

담당 : 임주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61세)는 197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녀를 두었다. 피고는 큰 딸이 11세가 된 때부터 수시로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피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는 매번 화를 낸 후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피고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것이며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지난 30여 년간 혼자서 자녀를 모두 양육하고 출가시켜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4.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되, 5회 분할하여 2016. 5. 31.부터 2016.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원과 함께 지체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5-555

담당 : 나완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4세)과 상대방(남, 33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여 9세)을 두었으나, 2008년 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을,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을 각각 지정하였다. 이혼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1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사건본인 1은 자퇴를 생각할 만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2014년 12월경 사건본인1을 데려와 양육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동생부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이 성장할수록 학비 등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가정법원 2016. 7. 2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1의 과거 양육비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6.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도박과 경제적 무책임, 주벽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12

담당 : 임은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49세)는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경마, 경륜, 프로토, 토토 등 각종 도박을 일삼았고, 지인 및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피고는 직장을 구하여도 두 달 이상 다니지를 못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음주 후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많았고, 2015년 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여 원고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다. 피고의 도박과 주벽 등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7.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년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73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9세)은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1980년 2월 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사도우미나 식당 잡일을 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웠다. 그러나 교통사고후유증과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신청인은 결혼한 아들의 집에 무상거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마저 당뇨병이 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며느리(여, 47)가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여 버는 월 100만원 가량의 소득에 의존하여 여섯 식구가 생활해야 했다. 신청인은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를 조금씩 사용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노령 연금 20만 원으로 살아가는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전처의 혼인외자가 본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6-82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남, 3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남, 52세)를 부로, 소외 김**를 모로 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친모는 1997년 혼인 신고를 하였고, 2001년 협의이혼을 하였다. 혼인 중 피고의 친모는 원고에게 피고를 원고의 아들로 등재해도 되냐는 요청을 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혼하기 2주 전 피고의 친모는 일방적으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혼 후 피고와 단 한 번도 왕래 한 적도 없었다. 원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 주거급여 등 수급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6.22.)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급 지체 장애상태에서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고통받던 남성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6-97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20대에 일하던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한 후 실의에 빠져 알콜중독자로 세월을 보냈다.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였지만 1999년 11월에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신청인은 약 4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결국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다. 2004년경 신청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지만,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국가로부터 받는 수급비 49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 받기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의 외도 등으로 장기간 별거중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6-99

담당 : 이흥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63세)는 1989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결혼 초부터 피고는 술을 마

시고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일이 잦았다. 또한 피고는 복잡한 여자관계로 외박도 잦았으며, 내연녀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원고에게 물러서라고 강요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체적 고통과 불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시달렸고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준 일이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23년 넘게 별거 중이며, 원고는 이혼이 되지 않아 수급자 지정을 받지 못해 현재 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6.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불성실하게 한 전 남편에 대해
직접지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6-101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45세)와 채무자(남, 42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2세)과 사건본인2(여, 11세)를 두었으나 2014년 7월경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혼 후 2014년 12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2015년 1월경부터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 (광주가정법원 2016.4.4.)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1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118

담당 : 이상열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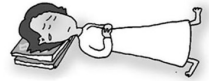
사건명 :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43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결혼 초부터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적이 없고 생활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지방 등지로 자주 이사하며 주위 사람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결국 이러한 폭력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 입소 후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2008년부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2013년부터 원고가 치료 받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다. 결국 2014년 피고에 이끌려 가족 전체가 버스터미널에서 지내다 경찰에 발견된 후, 피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개월 후 원고의 시댁식구들이 피고를 퇴원시켰고, 퇴원 이후 피고는 한 번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연락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15년 경 부터 취업하여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고 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 역시 피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6.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글 | 그림 | 장차현실

10월의 마지막 밤

한 해가 간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붉게 물든
낙엽이 떨어진다.



경쟁 치열한 속에서
아이들 대학보내라...



쥐꼬리 월급으로 살림하라.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매번 확인하며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고생한 중년 여인의
맘속에도 아직
낭만은 가득하다.
오래된 바바리
코트를 꺼내 입고



지인이 보내준 음악을 들으며
무작정 길을 나섰다.



상처 받은 국민들
10월에 마지막 밤을
한 목소리로 외친다.





저와 동생은 길을 잃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보육시설에서 같이 크다가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각자 일가 창립을 하여 별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통하여 형제관계임이 입증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에 대한 기재가 없어 형제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저와 동생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A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남매 사이로 고아원에서 같이 크다가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각자 일가 창립을 하여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던 갑과 을 중 갑이 운전 중 사망하였고 이에 을이 갑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혈연관계에 있는 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피상속인인 갑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을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판결).
따라서 귀하의 형제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형제는 혈연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하여 망자의 재산에 대한 지급 또는 명의이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자 상대방을 수증자로 하여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놓는다면 별도의 번거로운 소송 절차 없이 유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유언장의 작성을 권유해 드립니다.

김민선 변호사

상담소 소식



본소 회관에 서울 인권표지석 설치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 철폐의 산실로

지난 10월 14일 본소 회관 정문 보도에 서울 인권표지석이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으로 이루어진 인권표지석은 서울시에서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친화적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내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에 설치한 것이다.



본소는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 금혼 철폐의 산실로 인정받아 인권표지석 설치가 이루어졌다. 인권표지석은 황동판으로 여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본소의 이름과 창립연도인 1956 그리고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 여기서 사라지다' '인권서울'이라는 내용이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되었다.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10월 20일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주제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교육부의 연중기획으로 총 10차 가운데 8차로 진행된 이번 공개강좌에는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열정적인 강의청취와 의견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용강노인복지관 출장상담

오동준 법무관 (10월 24일)

출장법교육

- 10.13. 학교폭력예방교육
최수진 상담위원-신반포중(교사대상)
- 10.19.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대상 법교육
- 상속유언유류분
김진영 상담위원
- 10.20. 학교폭력예방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율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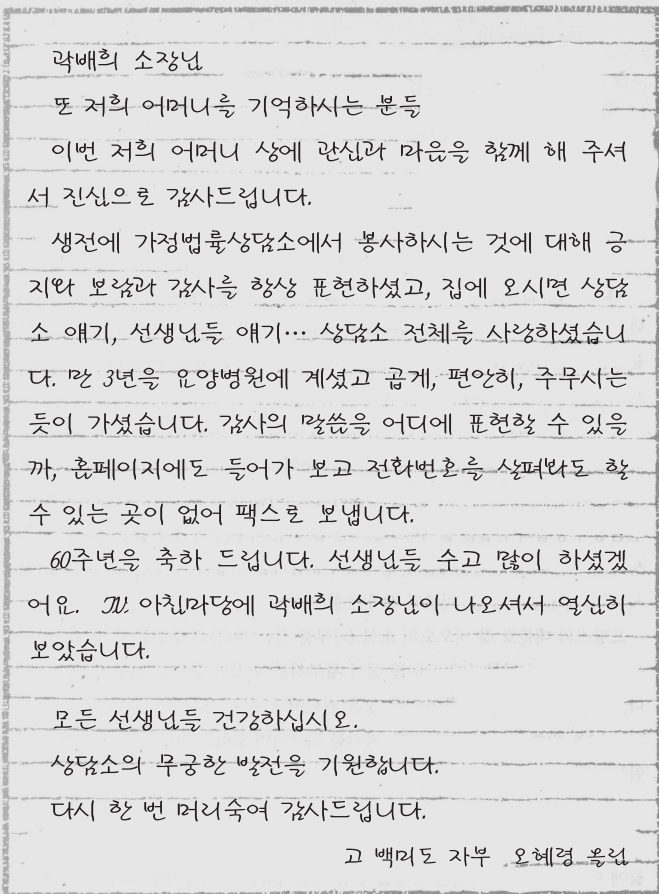
- 10.21. 법률홈닥터대상 가사소송법 강의
김민선 변호사
- 10.28. 폭력예방교육
오동준 법무관 - 양산초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14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친권 및 아동학대 법제 개선방안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하였고, 10월 6일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수탁 기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KBS '아침마당' 출연

본소 곽배희 소장은 10월 11일 본소 창립 60주년과 관련하여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였다.



- 상담소의 오랜 전화자원봉사자로 헌신하였던 고 백미도 선생의 자부가 상담소에 보내온 글입니다.

2016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영주,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이지선, 이혜민, 전현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진아, 심미숙, 이승주, 장철진,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빈대린,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님

• 학생 자원봉사

강은영, 곽민주, 김소희, 남보라, 박주연, 백다슬, 신수현, 윤혜정, 이경민, 이민주, 이정현, 이진실, 이혜진, 장윤서, 전승민, 전유진, 전해수, 김수정, 김우람, 김주영, 김현지, 손서영, 손준호, 이에스더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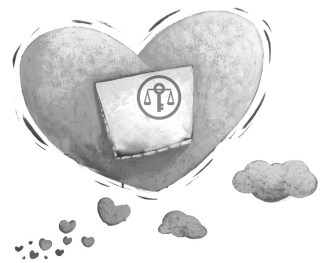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전현정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전수안, 조의지, 윤혜경, 오종숙 법우회(이대법대동창회), 이승훈 님





지부소식

강릉지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총 6회(443명) 실시하였다. 10월 13일,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상담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10월 4일, 10일, 11일,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10월 21일 법원연계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상담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5일, 29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정수희, 김미조, 김진원, 이재동, 구인호, 이용원, 장익현, 이희대, 전하은, 이석화, 류경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계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 총 8회, 광주시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

녀양육안내 총 4회 실시하였다.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 봉사를 하였고, 손수정, 송지민, 이경숙, 이수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으로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2회 실시하였다. 10월 13일, 20일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정혜, 김현명, 김현수, 박지훈(성남), 서정식, 양승철, 오도환, 위철환, 이국희, 최유나, 한두환, 홍성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익산지부

10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6일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10월 3일 이사회 및 단합야유회를 실시하였다. 19일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검찰청 등 가정상담지, 리플렛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25일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제주지부

10월 11일, 12일, 14일 경찰연계 피해자 상담을 실시하였다.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10월 17일 청구역에서 리플렛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27일 북한이탈주민여성 대상으로 “통일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김창건, 박진석, 정수경, 이재경, 임유정, 장경아, 이동건, 황은하, 여지은, 김형석, 백준익, 고정한, 고승현, 홍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0월 10일, 14일, 17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재영, 오유경, 남상업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10월 14일, 18일 증평지구대, 괴산지구대 경찰관 대상으로 법률구조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22명으로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춘천지부

10월 14일 신사우동 제1경로당 노인대상 등 생활법률강좌를 총 5회 실시하였다.

2016년 9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9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667건으로 본부가 6,572건, 지부가 6,095건이었다.

본부는 6,075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79건·소장 등 서류작성 166건·소송구조 5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249건·화해조정 766건·소장 등 서류작성 35건·소송구조 45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07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월에 비해 남녀관계(1.4%→1.6%), 이혼(24.9%→25.1%), 입양(1.1%→1.2%), 성년후견(1.0%→1.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6%→4.2%),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07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80건(21.1%), 전화상담 4,563건(75.1%), 통신 및 인터넷상담 231건(3.8%),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10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5,981			
법률상담 (5,493)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358	3,912	222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63		177	48

* 2016/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07,788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572	1,280	4,563	231		지상 1	6,075	279	166	52
강릉 (033) 652-9555	104	73	19				92	10	1	1
거제 (055) 633-7636	316	304	11				315	1		
광주 (062) 672-6011	77	31	46				77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75	182	58	1			241	34		
군산 (063) 442-1560	123	60	56				116	3		4
대구 (053) 745-4501	770	162	46	3		출장 318	529	240		1
대전 (042) 520-5258	239	37	200				237		2	
제주 (064) 753-9421	171	50	117				167	2		2
동해 (033) 535-0188	101	44	55				99			2
목포 (061) 273-2514	74		74				74			
부천 (032) 667-2314	275	74	139				213	62		
성남 (031) 707-6661	284	171	77				248	28	4	4
수원 (031) 243-4600	393	147	129	3		출장 35	314	78		1
순천 (061) 753-9910	132	73	51				124	8		
충구 (02)2238-6554	248	157	88				245			3
안동 (054) 856-4200	81	11	30				41	40		
울산 (052) 246-9568	148	35	107				142		5	1
익산 (063) 851-5113	230	69	141			출장 12	222		2	6
인천 (032) 865-1120	285	140	115				255	21	2	7
전주 (063) 244-2930	335	154	79	101	1		335			
정읍 (063) 535-3705	80	24	49				73	5	1	1
진주 (055) 746-7975	107	33	41				74	27		6
청원·미산 (055) 261-0280	295	174	98	2			274	18		3
청주 (043) 257-0088	267	52	63	2			117	144		6
춘천 (033) 257-4688	196	42	16			출장 96	154	42		
태백 (033) 554-4004	147	64	53			출장 29	146			1
평택·안성 (031) 611-4251	133	53	67			출장 1	121		10	2
제천 (043) 644-5690	107	33	72				105			2
포항 (054) 283-7555	102	25	74				99	3		
지부총상담	6,095	2,474	2,171	112	1	출장 491	5,249	766	35	45
총 상담	12,667	3,754	6,734	343	1	출장 491 지상 1	11,324	1,045	201	97

**2016/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6,869건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16.6~2016.10

책

동서의 문화와 창조	김상환 외 이학사 2016
인문학을 찾아서	김형국 열화당 2013
중세의 죽음	서울대학교중세르네상스연구소 산처럼 2015
인지인문학	양해림 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사물인터넷을 품은 라즈베리 파이	김성우 Jpub 2016
실무로 배우는 시스템 성능 최적화	권문수 위키북스 2016
R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유충현, 홍성학 인사이트 2015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Good java	우재남 한빛아카데미 2016
인터랙티브 웹디자인북	최성일 한빛미디어 2015
Nature of code : 자연계 법칙을 디지털 세계로 옮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략	다니엘 슈프만 한빛미디어 2015
핵심만 골라 배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닐 스미스 Jpub 2015
초보자를 위한 유니티 5 게임 제작 가이드	주동근 위키북스 2015
컴퓨팅적 사고를 위한 스크래치 & 앱인벤터	허태성 북스출력 2015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	마틴 파울러 위키북스 2015
네이버 모바일 테스트 이야기	김지은 외 위키북스 2015
리눅스의 神	정준석 로드북 2016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짓는 데이터 모델링 이야기	김상래 한빛미디어 2015
빅데이터 개론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빅데이터전략연구소 光文閣 2016
디지털유산	안재홍, 김충식 시그마프레스 2016
인문과학 정보원	이종권, 백항기 문헌 2015
법의 도덕성	론 폴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규범의 일반이론(1)	한스 켈젠 외 아카넷 2016
현행 헌법상 국민의 재판참여 가능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국가유공자 보상·지원의 법률적 형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미국 헌법상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심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독일 통일 후 체제불법정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통일헌법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등 76권

상담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주년 60장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2015년도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최정아 사서

2016년 1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12월은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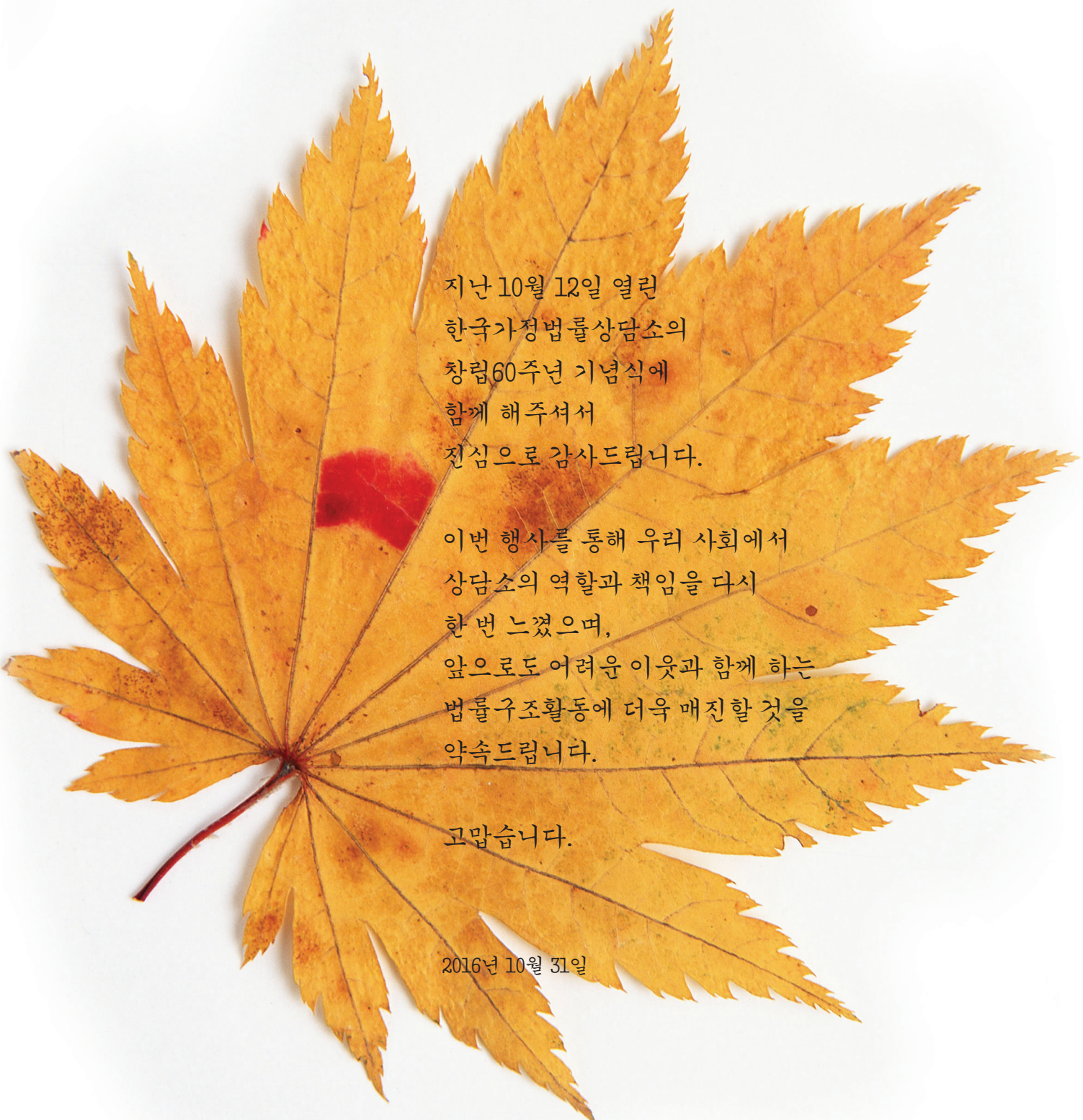
2017년 초·중·고등교사직무연수 모집

1.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2. 연수과정 구분 :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3. 대상 및 인원 : 서울·경기·인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40명
4. 연수 기간 및 시종 시간 : 2017.1.10.(화)~1.12(목)
10:30~16:30(1일 5시간)
5. 연수 이수 시간 : 15시간(1학점)
6. 평가 : 없음(연수과정 80%이상(12시간) 출석 시 이수증 발급)
7. 신청 기간 : 2016.11.1.~마감시 까지
(전화로 확인 요망, ☎ 02-782-3601)
8. 신청방법 : 신청서를 02-780-0485로
FAX전송 / 또는 이메일 전송(edu@lawhome.or.kr)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
9. 주요 과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폭력예방교육 등 강의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지난 10월 12일 열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6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상담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법률구조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0월 31일